

‘자율주택정비사업’

낡은 주택 소유자가 스스로
정비·건축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센터
(자율주택정비사업)로 신청하세요



조건 노후주택 2호~35호 이하 대상

혜택 사업비 용자 50%~70% (연 1.5%)
건축 관련법 일부 완화 용자이율



‘소규모 재건축사업’

재건축 보다 간소하게 추진할 수 있어요



조건

대지면적 1만㎡이하
200세대 미만 노후공동주택
조합설립(2/3이상) 인가 후 시행



노후 불량건축이 밀집한 가로구역이라면 ‘가로주택정비사업’



조건

대지면적 1만㎡이하 가로구역 (4면 6m이상 통과도로)
20호이상, 노후주택 2/3이상
조합설립(80%이상) 인가 후 시행

혜택

사업비 용자 50%~70% (연 1.5%)
사업절차 간소화로 기간·비용절감 용자이율

